

#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

## △ 공사계약특수조건

현행	개정
<p>공사계약특수조건 (조달청 계약 12711-53748, 2002. 9. 12)</p>	<p>공사계약특수조건 (조달청 계약 12711-55503, 2003. 2. 4)</p>
<p><b>제1조~제4조(생략)</b> <b>제4조(공사손해보험의 가입) ① 생략</b> ② 집행요령 제5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 상대방의 자기부담금은 매건당 각각 1억 이하로 한다. &lt;단서조항 신설&gt; ③ 생략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(Risk Survey Report)를 징수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을 50% 전후에 기정 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&lt;제4조에서 분리 신설&gt; ⑤~⑪(생략) <b>제6조~제18조(생략)</b>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1조~제4조(현행과 같음)</b> <b>제5조(공사손해보험의 가입) ① (현행과 같음)</b> ② _____ . 다만,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_____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(Risk Survey Report)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공정을 50%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⑥~⑫ (각각 현행 ⑤~⑪과 같음) <b>제6조~18조(현행과 같음)</b> <b>제19조(분쟁의 해결) ①</b>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
<p>〈신 설〉</p> <p>제19조 (생략)</p>	<p>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규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.</p> <p>제20조(현행 제19조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2003년 2월 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.</p>

△공사입찰특별유의서

현 행	개 정
<p>공사입찰특별유의서 (조달청 계약 12711-53748, 2002. 9. 12)</p> <p>제1조~제14조 (생략)</p> <p>제15조(낙찰자의 결정)①~⑤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16조~제19조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20조(생략)</p> <p>제21조(생략)</p> <p>제22조(생략)</p>	<p>공사입찰특별유의서 (조달청 계약 12711-55503, 2003. 2. 4)</p> <p>제1조~제14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낙찰자의 결정) ①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.</p> <p>제16조~제19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)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,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21조(현행 제20조와 같음)</p> <p>제22조(현행 제21조와 같음)</p> <p>제23조(현행 제22조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2003년 2월 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.</p>